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대통령령 제 14339 호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도서관의 이용자)**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의료기관에 임원 중인 자, 군사시설 또는 교도소에서 복무·근무를 하는 자 기타 특수 환경속에서 근무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서관 및 문고의 시설·자료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및 문고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사서직원 등의 배치기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에의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두어야 할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이하 “사서직원등”이라 한다)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고는 그 시설 및 자료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수의 사서직원 또는 사회교육전문요원등을 둘 수 있다.

**제5조(사서직원의 자격요건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②사서직원은 별표 3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사서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6조(시책)**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사서직원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서직원등의 연수
2. 사서교육과정의 개선

**제7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자료 및 문고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상호교환 또는 이관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3. 도서관 또는 문고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4.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3.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

③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또는 문고의 전체 장서의 100분의 3이내로 하되, 당해연도 수입 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의 관리·운용등)** ①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독서진흥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보조
2.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원
3. 독서생활화 및 국민독서운동사업에 대한 지원
4. 도서관발전 및 독서진흥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5. 도서관 및 문고의 지역문화사업·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6. 기타 도서관발전 및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

②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③문화체육부장관은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여유자금에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의 예치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재정투융자특별회계 기타 다른 기금에의 예탁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계획)** ①문화체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 3월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10조(기금의 회계기관등)** ①문화체육부장관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사무를 위임받은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그 기금의 지출 및 수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상 30인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문화체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립중앙 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경제기획원·내무부·재무부·교육부·문화체육부·보건사회부·체신부·총무처 및 과학기술처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협회의 장 및 문고협회의 장

3.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기타 도서관·문고 및 독서·출판업무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5조(지방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의 구성등)**

①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역대표관의 장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방대표관의 장(지방대표관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도서관 및 문고와 관련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당해 지역의 교육·문화계 인사 기타 도서관·문고 및 독서업무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지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의 도서관 및 문고의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한 시책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기타 도서관 및 문고의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법 및 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기타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국내외 도서관과의 자료의 유통)**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도서관과의 자료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국내외 자료의 조사 및 수집
2. 자료목록의 국제교류
3. 국가서지·제출자료속보·종합목록 기타 필요한 서지의 발간·배포
4. 분담수서와 상호대차제도의 수립·시행
5. 국내외 회귀자료의 복제와 배부
6. 국제도서관기구에의 가입과 국제간 공동사업 수행에의 참여

**제17조(국제교류를 위한 자료의 제공)** ①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제작한 자료중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필요한 수량, 교류대상국가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자료가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에 속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제교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자기관의 장에 대하여 당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국립중앙도서관의 지도·지원)** 법 제1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다른 도서관 및 문고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 및 문고의 관리·운영
2. 자료의 선정·교환·이관·폐기·제작 및 대차
3. 국민독서운동의 지도·지원
4. 지역별·도서관종류별 시범도서관의 운영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6. 자료의 국제교류
7. 도서관 및 문고의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제19조(독서생활화를 위한 시책)** 법 제1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연령별·직업별·계층별 독서운동
2.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독서지도활동
3. 장애인등을 위한 독서활동
4.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보급 및 독서진흥
5. 문화시설·교육시설등 관련기관과의 협조

**제20조(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에 대한 연수)**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사서직원등과 도서관 및 문고의 봉사업무에 관련된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연수를 위하여 사서연수 과정을 설치·운영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연수과정은 일반연수과정과 특별연수과정으로 구분하되, 일반연수과정은 연수를 받고자 하는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이 5년에 1회이상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각 도서관 및 문고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연수에 소속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연수를 다른 도서관·연수기관 또는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설치한 대학에 위탁하

여 실시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기타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에 대한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제21조(자료의 제출등)**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료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지도
2. 슬라이드
3. 전산화 자료중 테이프 및 디스크
4. 마이크로 형태물중 창작된 자료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도서관자료제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자료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국립중앙도서관장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표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료제출업무의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료번호부여신청서에 출판사의 연혁·출판실적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상

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료번호의 부여시에 자료분류기호를 부가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④자료번호 및 자료분류기호(이하 “한국문헌번호”라 한다)의 부여대상·절차 및 표시방법등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헌번호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⑤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번호의 부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지역대표관의 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⑥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한국문헌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그 자료에 한국문헌번호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23조**(한국문헌번호운영심의회) ①한국문헌번호의 부여에 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한국문헌번호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관련행정기관소속 공무원 및 도서관·출판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제24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시설 및 자료기준에 적합한 공공도서관을 1개이상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제25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15인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해 도서관의 장과 당해 도서관의 봉사대상구역 안의 문화계·교육계 전문이사 및 이용자중에서 당해 도서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26조**(운영위원회의 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27조**(운영위원회의 회의등) 제13조의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8조**(사립공공도서관등의 등록) 법 제25조제1항 또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설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청문의 절차) ①법 제25조제3항(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서가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일 7일전까지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서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청문일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거나 송부받은 청문서에 소명요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청문에 응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0조**(사립공공도서관등의 폐관신고) 법 제27조(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폐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폐관신고서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회의실등 이용 수수료
3. 자료 복사료
4. 장기간 강습·교육참여에 대한 수수료
5. 입관료(사립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제32조**(공립문고의 설립)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 단위의 지역에 별표 1의 시설 및 자료기준에 적합한 공립문고를 1개이상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립문고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이를 설립하여야 한다.

**제33조**(사립문고의 설립) ①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장·주거단지·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종업원이 300인이상인 사업장
2.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단지
3. 6층이상 또는 연면적 7천제곱미터이상(특별시의 경우에는 11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박물관·미술관·공연장·지방문화원·복지회관·청소년시설·체육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4조**(도서관협력망등의 구성)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종류별로 이를 구성할 수 있다.

②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대표관이 지방대표관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도서관 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방대표관을 지정한 때에는 중앙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협력망운영계획)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의 장은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3월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력망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역대표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역대표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력망운영계획에 따라 당해 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협력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관의 장은 협력망 상황을 연차별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관의 장이 보고할 때에는 지역대표관과 협력망에 참가하는 각종 도서관은 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조사 요구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6조**(독서의 달등)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한다.

②제1항의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독서관련단체 및 직장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독서진흥에 관한 연구·발표등 학술행사

2. 백일장·강연회등 독서관련행사
3. 국민독서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제몽 및 홍보활동
5. 기타 독서환경조성을 위한 행사

**제37조(시상)**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시상하는 상은 독서문화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서문화상의 수상대상자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실적이 우수한 대한민국민인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

③독서문화상의 시상은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등)** 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기금중 특정의 도서관 및 문고 또는 특정지역의 도서관 및 문고의 진흥을 조건으로 조성된 기금의 관리·운용
2. 법 제25조(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립공공도서관의 등록·시정명령 또는 등록취소에 관한 업무
3. 법 제26조(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립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 및 서류제출 요구
4. 법 제27조(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립공공도서관의 폐관신고의 수리
5.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등록
6.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9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문화체육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①도서관진흥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대통령령 제13342호 도서관진흥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도서관법시행령(이하 “중전의 도서관법시행령”이라 한다)의 별표 2중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대통령령에서 이에 관하여 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제3조(국·공립공공도서관 관장의 사서직 임용시기)** 법 부칙 제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1996년 12월 31일을 말한다.

**제4조(사서직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중전의 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서자격증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사서자격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중전의 도서관법시행령 부칙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동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급정사서 또는 2급정사서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부칙 제5조제4항 또는 동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해당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도서관진흥법시행령 별표 3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이 영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으로 본다.

**제6조(도서관의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배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에 의한 도서관 종류별 시설 및 자료기준과 별표 2에 의한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1호중 “도서관진흥법시행령”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으로 한다.

제34조제4항제2호중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② 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중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및독서

진흥법”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중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④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3호중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1항제9호중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⑥ 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중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⑦ 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서관진흥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그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도서관 및 문고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제3조관련)

1. 공공도서관

봉사대상 기준인구(인)	시 설		자 료	
	건물(제곱미터)	열람석(좌석수)	기본장서(권)	연간증가(권)
2만미만	264이상	60이상	3,000이상	300이상
2만이상5만미만	660이상	150이상	6,000이상	600이상
5만이상10만미만	990이상	200이상	15,000이상	1,500이상
10만이상30만미만	1,650이상	350이상	30,000이상	3,000이상
30만이상50만미만	3,300이상	800이상	90,000이상	9,000이상
50만이상	4,950이상	1,200이상	150,000이상	15,000이상



비고 :

- 가. 봉사대상기준인구는 도서관이 설치되는 당해 시(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구·읍·면의 인구를 말한다.
- 나. 봉사대상기준인구가 2만인이상인 공립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외에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시청각실·회의실·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은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 라.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하여는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열람석과 필요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마.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외에 연속간행물을 봉사대상 1천인당 1종이상, 시청각자료를 봉사대

상 1천인당 10종이상, 연간증가 1종이상을 각각 갖추고, 기타 향토자료·전산화자료·행정자료등을 갖추어야 한다.

- 바. 사립공공도서관의 시설기준은 봉사대상기준인구 2만인미만에 대한 시설기준으로 하며, 자료기준은 자체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2. 전문도서관(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봉사대상	시설 및 자료기준
공 중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점)이상이어야 한다.

3. 특수도서관(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봉 사 대 상	시 설		자 료	
	건 물	기계·기구	장 서	녹음테이프
시각장애인	면적:66제곱미터이상 자료열람실 및 서고: 면적의 45% 이상	1. 점자제판기 1대이상 2. 점자인쇄기 1대이상 3. 점자타자기 1대이상 4. 녹음기 4대이상	1천500권이상	500점 이상

비고 : 건물면적에는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문고

시 설		자 료
건물(제곱미터)	열람석(좌석수)	
33제곱미터이상	6석이상	1,000권이상

비고 : 건물면적에는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2]

도서관에의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제4조관련)

구 분	배 치 기 준
공공도서관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인을 두되, 그 면적이 33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둔다.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	1. 공중을 봉사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에 대하여는 공공도서관에 관한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을 준용한다. 2. 시각장애인을 봉사대상으로 하는 특수도서관에는 사서직원 1인 이상을 둔다.

[별표 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제5조 관련)

구 분	자 격 요 건
1급정사서	1.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 2.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과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자 3.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근무경력 기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9년이상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
2급정사서	1.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자 2.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 또는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6.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7.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1년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준 사 서	1. 전문대학 문헌정보과 또는 도서관과를 졸업한 자 2. 전문대학(종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자

비고 :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에서의 근무경력 은 당해 도서관의 열람실 면적이 110제곱미터·자료가 1천500권(시청각자료인 경우에는 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 표에 의한 도서관등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